

韓國의 OECD 加入에 따른 情報通信分野에서의 對應戰略

研究員 柳 在 鴻

한국은 지난 '96년 10월 11일 OECD의 29번째 신규회원국으로 초청되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OECD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한국은 '94년 11월부터 OECD내 ICCP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착실히 입수하고 제도를 보완해 옴으로써 현재로는 가입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OECD 가입 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각종 규제 및 법령을 자유경쟁의 시장원리 존중이라는 OECD 설립 목적에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것이 회원국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OECD 가입에 따른 우려나 두려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입 자체가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이나 무리한 정책일치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경제규모에 알맞는 정책기조를 지키면서 세계경제의 주도국들과 공동협력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目 次

- I. 머리말
- II. 情報通信分野의 OECD 加入 準備節次
 1. 韓國의 OECD 加入 推進過程
 2. 韓國의 OECD 加入前 ICCP 參與 活動
- III. ICCP의 役割과 世界의 通信政策에 미치는 影響
 1. ICCP의 役割
 2. ICCP가 世界의 通信政策에 미치는 影響
- IV. OECD 加入에 따른 情報通信分野의 遵守指針
 1. 遵守指針의 性格 및 韓國의 現況
 2. 私生活 保護와 個人情報의 國際流通에 관한 指針
 3. 情報體系의 安全에 관한 指針
 4. 暗號化에 대한 OECD 勸告指針
- V. 最近 ICCP에서 論議中인 主要 이슈
 1. 背 景
 2. 主要 이슈

VI. OECD 加入에 따른 情報通信分野의 影響 및 對應戰略

1. 公正競爭環境 造成
2. 市場開放과 競爭 擴大
3. 產業的인 側面
4. 對外開放

VII. 맺음말

I. 머리말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OECD 가입시기를 '96년말로 정하고 동년 11월 김영삼대통령이 제4회 신경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천명하면서 시작된 OECD 가입노력은 '9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29번째 회원국으로 결정되게 되었다.

한국 정보통신분야의 OECD 가입준비는 '94년 11월 정보통신분야의 주관위원회인 ICCP에 옮겨버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보통신분야는 금융, 외환, 노동, 환경분야와는 달리 분야별 심사는 없었다. 이는 정보통신분야에서는 OECD/ICCP에서 권고하고 있는 두가지 지침인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과 「정보체계의 안전에 관한 지침」의 수용과 시행 이외에는 가입에 따른 의무규정이나 요구사항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OECD 가입에 따라 지금까지 세계 주요 통신정책 결정 메커니즘에서 주어진 활동의 틀에서 움직이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과 몫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즉 GII-GIS 등 정보화부문에서 OECD가 주도적인 정책수립 역할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은 OECD/ICCP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고지침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위원회의 총회, 주요 연구반 및 특별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OECD 가입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 및 법령을 자유경쟁의 시장원리 존중이라는 OECD 설립 목적에 부합, 선진국 수준과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된다는 회원국으로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OECD 가입배경과 정보통신주관위원회인 ICCP의 역할 및 세계통신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입에 따라 한국이 준수해야 할 제 지침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ICCP에 논의되고 있는 국제통신 이슈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OECD 가입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영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을 고찰한다.

II. 情報通信分野의 OECD 加入 準備節次

1. 韓國의 OECD 加入 推進過程

우리나라 OECD 가입 준비절차 중 정보통신분야는 금융, 외환, 노동, 환경분야와는 달리 OECD내 정보통신분야 주관위원회인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Committee of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 ICCP)로부터 분야별 심사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는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가입에 따르는 의무규정이나 요구사항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가입 심사기간중이나 OECD 가입후 회원국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될 수 있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보호규정과 정보체계의 안전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OECD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개의 권고안인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과 「정보체계의 안전에 관한 지침」을 정책적·법률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할 용의 표시로 가입절차는 문제가 없었다.

2. 韓國의 OECD 加入前 ICCP 參與 活動

한국은 지난 '94년 11월, ICCP에 옵저버국으로 가입하여, 지금까지 ICCP 연차총회, 산하 연구반회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 대한 특별회의 등에 대표단을 파견, 정

책토론에 참여하고, 우리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 시장구조조정방안 등, 정보통신정책 동향도 소개하고 있다.

Ⅲ. ICCP의 役割과 世界の 通信政策에 미치는 影響

1. ICCP의 役割

ICCP는 OECD내에서 정보통신분야 정책을 주관하는 위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회원국간의 정보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의 발달과 응용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기술발전의 분석과 그 발전의 주요 의미에 대해 회원국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통신정책의 발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회원국간의 적절한 협력과 정책조정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CP산하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을 주로 논의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정책 (TISP :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실무반, 정보화사회 도래에 따른 경제발전, 생산성 및 고용창출과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확산 등의 과제를 연구하는 정보경제(IE : Information Economy)실무반, 그리고 개인 사생활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는 별도 실무반 등을 두고 있다.

2. ICCP가 世界の 通信政策에 미치는 影響

ICCP는 선진국들이 세계통신시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보통신 이슈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OECD 설립목적이 회원국간의 경제성장도모에 있고, 그룹의 핵심세력인 G-7 국가들이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OECD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노력과 의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주요

협의 내용이나, G-7 정보통신 각료회의를 통한 GII의 기본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 원칙과 정신에 바탕을 둔 G-7 공동 프로젝트 수행 추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OECD는 ICCP를 통해 G-7 요청에 따라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범세계적 정보통신기반(GII)과 범세계적 정보사회(GIS)의 기본원칙 정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GII-GIS 정책보고서 및 권고안을 작성한 바 있다.

그리고 OECD/ICCP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고용창출, 경제성장 등 거시적 문제도 다루고 있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이용한 국제상거래의 촉진과 전자거래(EC)의 발달에 대비하여 「암호화(cryptography)에 대한 OECD 권고지침」을 준비중에 있다.

IV. OECD 加入에 따른 情報通信分野의 遵守指針

1. 遵守指針의 性格 및 韓國의 現況

정보통신분야에서는 OECD 가입에 따른 준수 규범은 별로 없지만 가입 후에는 세계경제 발전과 국제무역의 확대라는 OECD 설립목적에 맞는 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원리 중시원칙과 자유화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단순히 OECD의 권고지침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거시적 관점에서 정보통신 정책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우선 두 개의 권고안인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과 「정보체계의 안전에 관한 지침」의 이행을 위한 순차적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다행히 현재는 우리의 정책이나 법령이 이들 권고안 내용을 수용하고 있거나, 전향적으로 수용할 예정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리고 OECD에서 '97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암호화에 관한 정책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회의에 참여하면서 정책지침 설정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

다.

2. 私生活 保護와 個人情報의 國際流通에 관한 指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자료가 빠른 시간내에 국경을 초월하여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OECD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사생활 보호장치를 서로 다른 국가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80년에 본 지침을 제정, 권고하여 현재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으며, 수집도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과 절차하에서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은 그 정보가 수집되는 시점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사용 또한 목적에 합치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다.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나 당국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거나, 상기 명시된 목적 이외로는 쓰여서는 안된다.
- 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발, 사용 및 정책 등에 있어 공개주의라는 일반 원칙이 있어야 한다.
- 마. 개인은 자료를 다루는 자들로부터, 자기에 대한 자료의 보유 유무를 확인 받거나,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가 거절되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OECD가 권고한 기본원칙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情報體系의 安全에 관한 指針

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체계의 이용이 증가하게 되자,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정보체계의 보호는 정

보통신 성격상 국제적 유통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동협조가 매우 긴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CCP는 정보체계가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보체계의 안전에 관한 지침을 1992년에 발표하였다. 본 권고지침에서의 “정보체계”란 컴퓨터, 통신시설, 통신망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저장, 가공, 전송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이용, 운영, 보전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 등을 포함한 모든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데이터와 정보들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체계의 소유주, 제공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나. 정보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의 소유주, 제공자, 사용자 및 기타 관계자들이 정보체계의 안전에 관한 조치, 관행, 그리고 절차가 존재하고, 그들의 일반적 범위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 정보통신체계의 안전에 대한 조치, 관행 그리고 제반 절차들은 기술적, 행정적, 조직적, 운영적, 법적 등 제반 관점들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라. 정보체계의 안전에 관한 조치, 관행 그리고 절차 등은 안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들과도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마. 정보체계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보체계와 그들의 안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동 권고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는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관련사항을 수용, 시행중에 있다. 최근에는 전산망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강구와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앞으로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OECD 권고규정에 더욱 합치되도록 전향적으로 정책 수용을 할 예정이다.

4. 暗號化에 대한 OECD 勸告指針 ('97년 발표예정)

앞서 언급했듯이 OECD는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의 빈번한 접속으로 인하여 위협 받을 수 있는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화에 따라 주요 경제활동으로 대두할 전자상거래에서의 보안을 유지하며, 정보기술과 체계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암호화에 대한 공동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본 지침에 대한 논의가 ICCP에서 산업, 통신, 법무, 경찰, 국가안보, 외무장관을 포함하는 정부대표와 정보통신산업, 다국적기업, 재정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대표 및 사생활보호 옹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다루고 있는 주요 분야는 국제정책과 국가주권, 사생활보호, 암호화된 자료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등이며 사생활과 공공의 안전과 같은 다양한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들도 다루어지고 있다. 개략적인 지침의 내용(안)은 다음과 같다.

- 가. 암호에 대한 신뢰성 : 목적에 맞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나. 자유로운 암호기법 선택 : 암호사용자가 암호기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시장원리에 의한 암호개발 : 암호방식은 시장원리에 의해 개발돼야 하지만 국가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없다.
- 라. 암호기법의 호환성 : 암호와 관련된 표준은 국내·국제적으로 호환성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 마.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보호와 통신기밀을 포함한 사생활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 암호정책과 암호기법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존중되어야 한다.
- 바. 합법적인 암호접근 : 정부를 포함한 권한있는 기관이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적시에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수립한다.

사. 암호키 수탁자의 책임성 : 키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 한계는 상호 계약이나 법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아. 국제협력 : 각국정부는 암호정책이 조화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정부는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암호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V. 最近 ICCP에서 論議中인 主要 이슈

1. 背 景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정보통신의 정책기조도 독점에서 경쟁, 시장개방 등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이미 일부국가에서는 장비공급이나 기본서비스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정보통신기반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중통신사업자들이 합작을 통하여 국제부가서비스와 음성전화를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제정보통신부문의 경쟁이 도입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며, 많은 영역에서 경쟁에 대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설비참여자들간의 추가통신망과 관리자료망 서비스 경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재판매업자들간의 경쟁, 위성 대 광케이블간의 인프라 경쟁, 공중통신 사업자들과의 통화발신경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양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대부분은 국내규제제도의 변화속도와 변화의 구조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요인 때문에 비대칭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유기적 체계 미비는 원할한 국제통신제도를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여타 국가들간의 심각한 격차를 만들었고 그 격차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피하면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국제적 체계가 부재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양국간 국제 부가통신망서비스와 지역적인 협약이 주로 맺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안하고 각종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 각국 정부로 하여금 기존 정책들을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WTO 기본통신 협상의 '97년 2월 종결과 더불어 세계 통신시장은 전례가 없는 대변혁이 예상되며, 그 중 많은 정책과 제안이 OECD내에서 보다 더 검토되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主要 이슈

OECD에서 논의되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관심 이슈는 시장원칙을 중시하고 자유화원칙을 존중하는 OECD의 주된 관심인 '공정경쟁' 확립에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제 단순재판매

- 국제 단순재판매 서비스의 등장은 국가들간의 심한 가격차와 비용의 과도한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 이 서비스는 경쟁을 자극하고 요금을 낮출 수가 있으며, OECD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원가에 기초한 정산요금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나. 국제요금과 가격정책구조

- 통화가격과 정산요금이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이같은 가격왜곡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개선안 창출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 원가에 기초한 정산요금 체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최선의 메카니즘이 될 것이다.

다. 통신기반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 자유화와 세계화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속에서 통신기반 구조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허용 정도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 통신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라. 이동통신

- 유선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과 그들 자회사 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들간의 구조적 분리가 강화된다면 이동통신 서비스의 성장이 더욱 촉진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마. 국제부가통신망서비스

- 국제부가통신망서비스 (International Value-Added Network Services : IVAN)협정은 지배적인 국내통신사업자들이 외국인 IVAN 공급자들에게 국내 공급자들과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비관세서비스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바. 설비경쟁

- 통신분야의 많은 이슈와 규제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반과 기본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적인 국제시장이 부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므로, 경쟁적인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인프라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사. 통신설비와 서비스의 접속과 이용

- 지배적 사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소유설비를 반경쟁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접속에 관해서는 동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상호접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아. 번호계획

- 번호계획은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의 출현에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VI. OECD 加入에 따른 情報通信分野에 미치는 影響 및 對應戰略

우리의 OECD 가입은 지금까지 세계 주요 통신정책 결정 메커니즘에서 주어진 활동의 틀에서 움직이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과 몫을 찾는데 주력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즉 GII-GIS 등 정보화부문에서 OECD가 주도적인 정책수립 역할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은 OECD/ICCP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고지침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위원회의 총회, 주요 연구반 및 특별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입에는 별 요구사항이 없었지만, OECD 가입 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 및 법령을 자유경쟁의 시장원리 존중이라는 OECD 설립 목적에 부합, 선진국 수준과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것이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1. 公正競爭環境 造成

OECD 가입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도입, 시장개방 강화가 우리 정보통신정책의 기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는 '96년 8월 통신서비스 공정경쟁제도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국내 통신시장을 전면 경쟁체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접속에 대한 협정체결에 대해 장관명령이 없어도 통신사업자가 통신위원회측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체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조정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개선의지를 발표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OECD 가입에 대비한 국내 통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여건 조성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2. 市場開放과 競爭 擴大

국경없는 경제공동체화 현상속에서 보다 폭넓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원리가 강조될 것이며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확대가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시장개방과 무리한 정책일치를 강요 받는 것이 아니며,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OECD에 가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아직 경쟁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경쟁을 도입할 계획에 있고 그 시기도 우리나라보다 늦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입에 따른 우려나 두려움에 앞서 우리의 경제 규모에 알맞는 정책기조를 지키면서 세계경제의 주도국들과 공동협력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表 1> OECD 국가들의 부문별 경쟁 현황

	PSTN			데이터통신 및 전용회선		이동통신			이동통신 사업자 수
	Local	Trunk	Intl.	X. 25	LLs	Anal.	Digl.	Paging	Paging제외
호 주	D '97	D '97	D '97	D '97	D '97	D	C	C	7
오스트리아	M	M	M	M	M	M	M	C	2
벨 기 예	M '98	M '98	M '98	C	C	M	D	M	3
캐 나 다	C	C	M(2)	C	C	D	D	C	8
체 코	PC	M	M	C	PC	M	D	M	28
덴 마 크	C	C	C	C	C	M	C	C	3
핀 란 드	C	C	C	C	C	M	C	C	36
프 랑 스	M '98	M '98	M '98	C	C	D	C	C	5
독 일	M '98	M '98	M '98	C	C	M	C	C	3

	PSTN			데이터통신 및 전용회선		이동통신			이동통신 사업자 수
	Local	Trunk	Intl.	X. 25	LLs	Anal.	Digl.	Paging	Paging제외
그 리 스	M 2003	M 2003	M 2003	C	M 2003	-	D 2003	C	3
헝 거 리	M 2002	M 2002	M 2002	C	M	M	D	D	3
아이슬란드	M	M	M	M	M	M	M	M	
아 일 랜 드	M	M	M	M	M	M	M	M	
이탈리아	M '98	M '98	M '98	M '98	M '98	M	D	-	3
일 본	C	C	C	C	C	C	C	C	85
룩셈부르크	M	M	M	M	M	M	M	M	2
맥 시 코	C	C	C	C	C	D	D	C	
네덜란드	M '97	M '97	M '97	C	C	M	C	C	4
뉴질랜드	C	C	C	C	C	C	C	C	3
노르웨이	M '98	M '98	M '98	M '98	M '98	M	D '98	-	3
포르투갈	M 2000	M 2000	M 2000	C	M 2000	M	D	C	3
스 페 인	M	M	M	C	M	M	M	C	3
스 웨 덴	C	C	C	C	C	C	C	C	9
스 위 스	M	M	M	M	M	M	M	C	2
터 키	M	M	M	M	M	M	M	M	-
영 국	C	C	C	C	C	C	C	C	6
미 국	PC	C	C	C	C	RD	C	C	-
한 국	M '97	D '97	C	C	C	M	D	C	5

참고 : C(완전경쟁), PC(부분경쟁), D(복점), RD(지역 복점), M(독점)

199x : 완전경쟁 도입 예상시기

資料 : OECD

3. 産業的인 側面

정보통신산업은 특성상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기는 하지만 여타 전체산업의 필수 중간재적인 산업으로 산업 전반에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자체산업내에서도 사업자간, 서비스 영역간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경제전반 또는 정보통신산업 전체에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민간기업차원에서는 상업적인 손실(예를 들면, 자체 훈련된 고급인력을 국내 및 국외 타기업에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아직 유치단계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전면·일시 경쟁 도입 및 개방은 자연독점적인 정보통신산업의 속성에서 연유하는 경제왜곡 효과를 경쟁 및 대외개방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외국사업자에 의한 국내사업자의 급격한 대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에 따라 「선 국내경쟁, 후 대외개방」의 정보통신부 정책기조 유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세계 각국에서 통신산업이 전통적으로 독점체제하에서 정부의 보호막에 있었다는 사실은 상기 논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국영 또는 공영에서 민영으로 사업체제를 바꾼다는 것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상기 파급효과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 확보된 연후에 대외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그동안 선진국들도 모두 경험한 바라고 할 수 있다.

4. 對外開放

우리의 대외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90년 이후 통신기기 및 부가통신서비스에 있어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시행하여 왔다. 미국에 대해서는 '92. 1월과 '93. 1월 각각 일반통신제품과 통신망장비를 개방하였다. '90. 1월에 미국에 일부 개방된 부가통신 서비스는 '94. 1월부로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이듬해인 '95. 1월부터는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에 의거, WTO 모든 회원국에게 부가통신망서비스를 개방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에서는 기본통신서비스에 있어 포괄적인 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EU에 대해서는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 및 기술에서 열세인 국내기업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합작투자 한도를 현재 33%로 하고 있다. 대외개방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재판매부문에서는 1998년이 아닌 2001년을 그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개방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면 자유화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의 통신망 보유자가 부담하는 보편적서비스 의무로 인해 요금구조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기존망을 빌려 선별적인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업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국내에는 기존제도에 의해 통신망사업자간의 경쟁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기존망을 빌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도 않으며 재판매사업자도 부채한 상태이다. 따라서 통신망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하부구조의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통신망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서 통신시장에서의 경쟁 효과가 국가적으로 극대화될 때만이 국내업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경쟁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대외경쟁은 국내 기업의 설자리를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국내통신서비스 공급이 외국기업에 의해 대체될 경우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에서 공급된다고 볼 수 없는 보편적서비스 및 국가안보상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상업적인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기업이 감당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장기능 활성화와 통신산업 효율화를 지향하는 경쟁도입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통신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통신환경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 기조 설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임에 틀림없다.

Ⅶ. 맺음말

OECD가입에 따라 우리는 세계 신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대외협력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를 무대로 한 대외경제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 운용 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 권익보호, 보건·안전 기준의 강화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경상적자나 추가 개방에 따른 부작용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보통신분야도 OECD 가입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나, 선진국의 그룹인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각종 규제 및 법령을 OECD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 선진국 수준과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아가야 한다. 즉, 국경없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보다 폭넓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할 것이며,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확대가 요구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이 곧 무한정 시장개방을 강요받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의 경제규모에 알맞는 정책기조를 지키면서 세계경제의 주도국들과 공동협력의 장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독점시대의 규제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대체 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미 경쟁의 원리를 통신시장에 도입한 이상 정부의 정책은 조속한 시일내에 비대칭적인 규제를 통하여 통신산업에 시장기능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통신정책이 어떻게 경쟁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정경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방향이 있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경쟁 여건의 결정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한 정책결정 구조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시장경제 원리가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이나 통신시장환경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의 통신산업은 국제화, 개방화에 뒤쳐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고, 통신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얻게 될 것이다.

参 考 文 献

- 통신개발研究院, 『격주간 통신정책 동향』, 각호
- 정인억·정찬모,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경쟁과 협력구도』, 통신개발연구원, 1995.
- 조신·이봉호·서정원,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립』, 통신개발연구원, 1992.
- OECD/ICCP, OECD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issues and developments, 1995
- OECD/ICCP, Seventeenth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1996
- Hiroko Kamata, “OECD work in cryptography policy guidelines”, 1996, KISDI-OECD Workshop